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6. 9 선고 2021가단122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어업회사법인 유한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원 담당변호사 이경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세귀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5.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조건)

피고는 'C'를 운영하면서 조업으로 어획한 수산물을 2016. 7. 1.부터 12. 30.까지 원고에게 어획물의 전량을 납품하기로 특별약정한다.

제3조 (거래약정금)

위 제2조의 계약기간에 따른 거래약정금은 육천만원으로 하되, 변제일은 2016. 12. 30.까지로 한다.

제4조 (수산물 전량 납품 특약조건)

피고는 어획한 수산물의 전량을 원고에게 전량 납품하기로 하고, 이를 위반 시에는 선수금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한다.

제5조 (어대금 정산방법)

가. 어획물의 가격결정은 다른 선박의 가격에 준하여 결정하고, 품질규격은 전문선별사의 판단기준에 따르기로 한다.

나. 어대금의 정산기간은 매주 일주일마다(수요일) 정산하기로 하며, 원고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통보하고 어대금을 결제한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6. 5. 24. 피고가 지정한 D에게 1,000만 원을, 2016. 6. 18. 피고가 지정한 E에게 나머지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여 거래약정금 합계 6,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C'를 운영하여 어획한 수산물을 원고의 수산물센터에 납품하였는데, 납품한 물량을 50kg 용량의 플라스틱 바구니에 가득 채워오지 아니하여 꽃게가 손상되거나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였고, 정상품의 수량과 납품액이 평균보다 낮았다.

라. 피고는 2016. 9. 12. 이후 더 이상 원고에게 납품을 하지 않았고, 2016. 9. 24. 거래약정금 중 5,000만 원을 임의로 원고에게 반환하였고 그 이후 나머지 거래약정금 1,000만 원을 구채서 등을 통하여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기간 동안 어획한 꽃게를 전량 납품하지 않았고 계약 기간 도중 납품을 중단하면서 타처에 꽃게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6. 12. 30.까지 원고에게 어획물의 전량을 납품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제4조에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게 거래약정금의 배액인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인 2021. 12. 3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선별을 잘못하고 작업속도가 느렸으며 중량을 속이면서 가격을 작게 주어 납품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을 제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는 별다른 객관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원고가 제의한 선별작업 감독에 적극적으로 응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